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

— 구비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 서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단,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확인 /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까지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생애 최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혼인 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소득세 납부 자격 입증서류	본인	• 근로자, 사업자, 직전 1년 내 소득세 납부자 등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출산이행각서		• [건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산증빙서류(추첨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자산가액 증빙서류(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세대구성원 전원 소유여부 확인
	○		최하층 우선배정입증서류	본인	•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시(군 복무 기간을 명시)
	○		해외 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본인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증빙서류 확인
부적격 통보 받은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용을 확인하는 공문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형차가 주택 등)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세대원	•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까지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 구비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 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직장가입자만 해당 (건강보험증 기준)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전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 구비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서류구분	확인자격	자격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모집공고일이 포함된 당해연도도 인정함)의 5개년도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자산 증빙서류 안내

— 자산 기준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 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3.29.(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 주민센터 ▪ 이택스 (etax.seoul.go.kr) ▪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주민센터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시군구청(또는 위택스)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4.03.29)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